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8642
------------	-------

발의연월일 : 2022. 12. 2.

발 의 자 : 박완주 · 김홍걸 · 박찬대

변재일 · 신정훈 · 양정숙

위성곤 · 이상현 · 이정문

전용기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ICT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의 시장 출시 및 테스트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일정한 조건 하에 관련 규제의 적용을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임.

현행법에서는 규제 특례에 대한 유효기간을 두고 있으나 사업의 개시 시점에서 유효기간이 시작되는데, 규제특례 등의 승인 후 사업 착수가 늦어질 경우 규제 필요성 등 제반 상황이 변화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임시허가 또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허가 및 특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례 승인 이후 내실있는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1항제5호 및 제38조의4제1항제5호 신설).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임시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제38조의4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시허가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임시허가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4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8조(임시허가의 취소)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7조 제3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을 명하거나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임시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p> <p>1. ~ 4. (생 략)</p> <p><u>&lt;신 설&gt;</u></p> <p>② · ③ (생 략)</p> <p>제38조의4(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지정의 취소)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8조의2제3항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을 명하거나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실증을 위한</p>	<p>제38조(임시허가의 취소) ① ----- ----- ----- ----- ----- ----- ----- ----- ----- ----- ----- ----- ----- ----- ----- ----- 1. ~ 4. (현행과 같음) <u>5. 임시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u> <u>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u> ② · ③ (현행과 같음)</p> <p>제38조의4(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지정의 취소) ① ----- ----- ----- ----- ----- ----- ----- ----- ----- ----- ----- ----- ----- ----- -----</p>

<p>규제특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p> <p>1. ~ 4. (생략)</p> <p><u>&lt;신설&gt;</u></p> <p>② ~ ④ (생략)</p>	<p>-----</p> <p>----.</p> <p>-----.</p> <p>1. ~ 4. (현행과 같음)</p> <p><u>5.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u></p> <p><u>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u></p> <p><u>특별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u></p> <p><u>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u></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	---